제 1999-01 호

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신고필증

1. 상호(명칭): 안성산업(주)

2. 성명(대표자): 대표이사 (생년월일:)

3. 주소(사업장소재지):

경기도 안성시 보개면 보삼로 39

(전화번호: 0316728993)

4.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내역

가. 관리대상시설의 종류 및 명칭 : 석유류의 제조 및 저장시설 옥외탱크

나. 오염물질의 종류 및 저장용량: 저장시설:총3기 총용량:26,650.00 &

다. 그 밖의 주요내용: **[별첨 참조]**

5. 토양오염방지시설 설치내역

가. 방지시설의 종류 : 부식방지, 방유제 및 유수분리조

나. 설치내용: 도장법, 방유제 및 유수분리조

다. 그 밖의 주요내용:

6. 누출검사대상시설 여부

[□] 해당 [□] 해당하지 않음 [■] 확인을 신청하지 않음

「토양환경보전법」 제 1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0조에 따라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설치(변경)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.

1999년 10월 13일

경기도 안성질량

<변경 사항>

일	자	내용	확	인

<행정처분일자>

일	자	내 용	확	인

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내역				
그 밖의 주요내용 :	1.토양오염도 검사는 준공완료 시점에서 최초(완공후 6개월내) 검사후 15년까지 5년,10년,15년 되는해 각각 1회 검사(검사가 종료된 때부터 매 2년에 1회) 2. 누출검사는 완공후 10년이 지난때부터 매 8년이 되는해에 1회 실시 3. 수시검사는 명의변경, 폐쇄, 교체 사유가 발생되기 3개월전에 검사 실시 4. 토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토양오염 유발시설 주변일일점검, 주변환경 정리정돈 철저			

<저장시설>

시설명	오염물질	용량(단위)	수량(기)	완공일	시설형태
옥외1탱크	경유 (TPH)	4,300.00 l	1	1999/07/02	옥외탱크
옥외2탱크	제3석유류 (벙커C 유)	21,000.00 ℓ	1	1999/07/02	옥외탱크
옥외3탱크	제4석유류 (열매체 유)	1,350.00 ℓ	1	1999/07/02	옥외탱크

<참고사항>

일	자	내용	화	인